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89
----------	-------

발의연월일 : 2025. 9. 18.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김기웅

구자근 · 이성권 · 강선영

박충권 · 김미애 · 엄태영

진종오 · 이종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산불 사태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와 같이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했을 때의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3항제1호 신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7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u><신 설></u>	<u>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u> <u>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u> <u>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u> <u>자를 포함한다)</u>
<u>1. (생 략)</u>	<u>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u>
<u>1의2. ~ 1의7. (생 략)</u>	<u>1의3. ~ 1의8. (현행 제1호의2</u> <u>부터 제1호의7까지와 같음)</u>
<u>2.·3. (생 략)</u>	<u>2.·3. (현행과 같음)</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
<u>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u> <u>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u> <u>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u> <u>자를 포함한다)</u>	<u><삭 제></u>
<u>2. (생 략)</u>	<u>2. (현행과 같음)</u>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